

○ 주소·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붙임]

의견제출서			
공고명	사로수길 개성있는 간판 조성사업 기본계획		
의견제출자	성명(개인/단체)	전화번호	
	주소		
의견제출내용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9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사로수길 개성있는 간판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7-357호 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3호(2006.01.12)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35호(2012.9.6.)로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결정, 관악구고시 제2013-38호(2013.5.16.)로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된 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을 공람·공고합니다.

2.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내에 우리구(주택과)로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3월 9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 ☐ 공람기간 : 2017.3.10. ~ 2017.4.10.
- ☐ 정비사업의 명칭 : 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
 - 1. 위치 : 관악구 신림동 1644번지 일대
 - 2. 면적 : 24,558.1㎡

☐ 공람내용

1.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관악구 신림동 1644번지 일대	26,945.4	감)2,387.3	24,558.1	구역일부 제척에 따른 면적변경

2. 정비계획 변경

1)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			연면적(㎡)			비율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6,945.4	증) 2,387.3	24,558.1	2,375.40	증)676.79	3,052.19	100.00	구역일부 제척 등 면적변경
정비기반시설 등	소계	2,250.0	감)1,727.6	522.4	2,375.40	증)676.79	3,052.19	12.10	-
	공원	2,250.0	감)2,250.0	-	-	-	-	-	-
	도로	-	증)522.4	522.4	-	-	-	2.13	조성후 기부채납
	보육시설	-	-	-	1,182.93	증)33.18	1,216.11	3.78	조성후 기부채납
	체육시설	-	-	-	1,192.47	증)643.61	1,836.08	6.19	조성후 기부채납
	획지	24,695.4	감)659.7	24,035.7	-	-	-	97.87	-
획지1	24,695.4	감)659.7	24,035.7	-	-	-	97.87	공동주택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비율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6,945.4	- [감] 2,387.3]	26,945.4 [24,558.1]	100.0 [100.0]	-
주거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2,387.3 [-]	2,387.3 [-]	8.9 [-]	-
	준주거지역	26,945.4	감) 2,387.3 [감] 2,387.3]	24,558.1 [24,558.1]	91.1 [100.0]	-

※ []는 금회 변경 정비구역내 면적이며,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금회 정비구역 제척지로 기존용도지역으로 환원 계획함

3)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 기정 : 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정	중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2	-	8	국지도로	94	관악구 신림동 1676-7	관악구 신림동 1676-2	일반 도로	-	서고시 제310호 (1980.10.13)	시흥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폐지	소로	3	-	6	국지도로	250	관악구 신림동 1676-22	관악구 신림동 1676-2	일반 도로	-	서고시 제310호 (1980.10.13)	시흥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폐지	소로	3	-	5.8	국지도로	94	관악구 신림동 1676-6	관악구 신림동 1676-2	일반 도로	-	서고시 제310호 (1980.10.13)	시흥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폐지	소로	3	-	4	국지도로	46	관악구 신림동 1647-13	관악구 신림동 1647-13	일반 도로	-	서고시 제310호 (1980.10.13)	시흥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 사업시행인가(2006.12.1)시 용도폐지된 도로에 대한 사항

· 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정	중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변경사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2	1	8	국지도로	55	관악구 신림동 1675-7	관악구신림동 1644	일반 도로	-	제척지 차량진출입 도시계획도로 신설

나.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공원	어린이 공원	관악구 신림동 1648-9번지 일대	2,250.0	감) 2,250.0	-	서고시 제2006-23호 (2006.1.12.)	『2025 서울수도사주거환경기본계획』에 따라 효용성이 낮은 어린이공원 폐지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어린이놀이터	획지1	1,316.7	감) 20.94	1,340.76	-
	경로당	획지1	204.2	감) 39.20	165.0	-
	주민공동시설	획지1	187.0	증) 143.00	330.0	문고 및 입주자 회의실포함
	문고	획지1	69.9	감) 69.90	-	-
	관리사무소	획지1	98.3	감) 8.30	90.0	-
	보육시설	획지1	-주)	-	-	-
	근린생활시설 등	획지1	1,122.7	감) 798.33	324.37	-
	주민휴게시설 및 쉼터	획지1	3개소	증) 1개소	4개소	-
	경비실	획지1	33.3	증) 2.70	36.0	-
	주민운동시설	획지1	902.5	감) 38.72	863.78	-

※ 기정의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사업시행인가(2013.5.16.) 사항임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주민공동시설 총량면적 이상 확보

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6항의 규정 및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8조의4 제2항에 의해 미설치

5)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이주	
기정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6,945.4	공동주택 용지	21,962.5	관악구 신림동 1644번지 일대	18	-	-	18	-	철거 : 35동 신축 : 8동
			단독주택 용지	4,982.9	관악구 신림동 1644-3, 1647-7 번지 일대	17	-	-	17	-	
변경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4,558.1	공동주택 용지	21,962.5	관악구 신림동 1644번지 일대	18	-	-	18	-	철거 : 30동 신축 : 7동
			단독주택 용지	2,595.6	관악구 신림동 1647-7 번지 일대	12	-	-	12	-	

나.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 역 구 분		가 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강남아파트주택재	26,945.4	획지1	24,695.4	신림동 1644번지 일대	공동 주택	137,344.36	24.17	399.86	106 / 35층
변경	건축정비구역	24,558.1		24,035.7			144,659.279	22.67	405.99	106 / 35층
■건립규모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증감)		
				세대수	비율(%)	세대수	비율(%)			
			계	1,124	100.0	1,147	100.00	증) 23		
			장기전세주택	소계	173	15.39	130	11.33	감) 43	
				49㎡	100	8.90	130	11.33	증) 30	
				59㎡	73	6.49	-	-	감) 73	
			기업형 임대주택	소계	-	-	273	23.80	증)273	
				49㎡	-	-	116	10.11	증)116	
				59㎡	-	-	157	13.69	증)157	
			분양	소계	951	84.61	744	64.87	감)207	
				49㎡	154	13.70	79	6.89	감) 75	
				59㎡	609	54.18	529	46.12	감) 80	
				84㎡	188	16.73	136	11.86	감) 52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을 변경할 경우 서울시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변경할 수 있음. 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 12호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 제1항 8호에 따른 변경인 경우 제외함										
공공기여비율			기정	· 공공기여비율(토자+건축물) : 15.02% - 공원면적 : 2,250.0㎡(8.35%) - 보육시설 : 부속토지주) 290.9㎡이상(1.08%), 환산부지 566.1㎡이상(2.10%) · 보육시설 연면적 : 1,182.93㎡이상 (지상층 860.87㎡, 지하층(부속시설) 322.06㎡) - 체육시설 : 부속토지주) 293.2㎡이상(1.09%), 환산부지 648.3㎡이상(2.40%) · 체육시설 연면적 : 1,192.47㎡이상 (지하층 : 1,192.47㎡) ※부지면적 환산을 위한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은 정비계획 수립 후 사업시행인가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정 반영						
			변경	· 공공기여비율(토자+건축물+전면공지) : 10.51% - 도로면적 : 522.4㎡(순부담면적 132.4㎡, 0.54%) - 보육시설 : 부속토지주) 292.9㎡이상(1.19%), 환산부지 635.0㎡이상(2.59%) · 보육시설 연면적 : 1,216.11㎡이상 (지상층 837.93㎡, 지하층(부속시설) 378.18㎡) - 체육시설 : 부속토지주) 442.3㎡이상(1.80%), 환산부지 1,078.5㎡이상(4.39%) · 체육시설 연면적 : 1,836.08㎡이상 (지하층 1,836.08㎡) ※부지면적 환산을 위한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은 정비계획 수립 후 사업시행인가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정 반영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기정	· 신사로변(북측) 및 조원로변(남측) : 건축한계선 3m · 조원로11길변(동측) 및 서측구역계 경계면 : 건축한계선 2m						
			변경	· 신사로변(북측) 및 조원로변(남측) : 건축한계선 3m · 조원로11길변(동측) 및 서측구역계 경계면 : 건축한계선 2m						

※ 기정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은 사업시행인가(2013. 5. 16) 사항임

주) 부속토지는 시설면적에 대한 대지권 면적

○ 정비계획용적률 및 상한 용적률 산정

구분		정비구역	공동주택지	단독주택지
면적(㎡)	기정	26,945.4	21,962.5	4,982.9
	변경	24,558.1	21,962.5	2,595.6
기준 용적률	기정	$\bullet$ (공동주택지면적 / 정비구역면적 $\times$ 특정관리대상아파트 용적률) $+ (단독주택지면적 / 정비구역면적 \times 단독주택 용적률)$ $= (21,962.5/26,945.4 \times 300\%) + (4,982.9/26,945.4 \times 210\%) = 283.36\%$ 이하		
	변경	$\bullet$ (공동주택지면적 / 정비구역면적 $\times$ 특정관리대상아파트 용적률) $+ (단독주택지면적 / 정비구역면적 \times 단독주택 용적률)$ $= (21,962.5/24,558.1 \times 300\%) + (2,595.6/24,558.1 \times 210\%) = 290.48\%$ 이하		
정비계획 용적률	기정	$\bullet$ (공동주택지면적 / 정비구역면적 $\times$ 특정관리대상아파트 용적률) $+ (단독주택지면적 / 정비구역면적 \times 단독주택 용적률)$ $= (21,962.5/26,945.4 \times 300\%) + (4,982.9/26,945.4 \times 250\%) = 290.75\%$ 이하		
	변경	$\bullet$ 개발가능 용적률 = 기준용적률 $\times (1 + 1.3\alpha)$ $= 290.48\% \times (1 + 1.3 \times 0.10739)$ $= 331.03\%$ $\ast \alpha = \text{공공시설 제공부지 면적} / \text{제공후 대지면적}$ $= (132.4 + 927.9 + 1,520.8) / 24,035.7 = 0.10739$		
상한 용적률	기정	$\bullet$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물(D-E급)인 경우 2차 역세권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 400% (계획용적률 399.86%)		
	변경	$\bullet$ 1차 역세권 500%이하, 2차 역세권 400%이하 적용 $= ((1,473.6 \times 500\%) + (23,084.5 \times 400\%)) / 24,558.1$ $= 406\%$ (계획용적률 405.99%)		
장기전세주택 건립용적률	기정	$\bullet$ [상한(계획)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times 50\%$ $= 399.86\% - 290.75\% \times 50\% = 54.56\%$		
	변경	$\bullet$ [상한(계획)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times 50\%$ $= 405.99\% - 331.03\% \times 50\% = 37.48\%$		

※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

- 기정

구분		면적(㎡)	구성비(%)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
정비구역 면적		26,945.4	100.00	개발가능 용적률 = 기준용적률 × (1 + 1.3α) = 283.36% × (1 + 1.3 × 0.16394) = 343.75% ※ α = 공공시설 제공부지 면적 / 제공후 대지면적 = (2,250.0 + 857.0 + 941.5) / 24,695.4 = 0.16394
대지(공동주택)		24,695.4	91.65	
공공기여		4,048.5	15.02	
공원		2,250.0	8.35	
보육 시설	부속	290.9	1.08	
	환산	566.1	2.10	
	소계	857.0	3.18	
체육 시설	부속	293.2	1.09	
	환산	648.3	2.40	
	소계	941.5	3.49	

- 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
정비구역 면적		24,558.1	100.00	$\bullet$ 개발가능 용적률 = 기준용적률 $\times (1 + 1.3\alpha)$ $= 290.48\% \times (1 + 1.3 \times 0.10739)$ $= 331.03\%$ $\ast \alpha = \text{공공시설 제공부지 면적} / \text{제공후 대지면적}$ $= (132.4 + 927.9 + 1,520.8) / 24,035.7 = 0.10739$
대지(공동주택)		24,035.7	97.87	
공공기여		2,581.29	10.51	
도로(순부담)		132.40	0.54	
보육 시설	부속	292.9	1.19	
	환산	635.0	2.59	
	소계	927.9	3.78	
체육 시설	부속	442.3	1.80	
	환산	1,078.5	4.39	
	소계	1,520.8	6.19	

○ 공공기여비율 산정

- 기정

구분		공공기여비율 (용도지역 1단계 상향 : 15%이상)		
구역면적(㎡)	26,945.4	공공시설 연면적 (㎡)	보육시설	1,182.93 이상 (지하 322.06 포함)
대지면적(㎡)	24,695.4		체육시설	1,192.47 이상(지하 1,192.47설치)
기반시설면적(㎡)	2,250.0			
총 공공기여 비율(%)		15.02 (부지 8.35% + 건축물 6.67%)		
공공시설 설등	부지(공원)		•공원면적/구역면적 = 2,250.0㎡ / 26,945.4㎡ = 8.35%	
	보육 시설	부속토지주1)	•(보육시설 연면적 / 건축물 분양면적) × 대지면적 / 구역면적 = (1,182.93㎡ / 100,435.6㎡) × 24,695.4㎡ / 26,945.4㎡ = 1.08%	3.18%
		환산부지주2)	•유형별 표준건축비 × 건축연면적 / 부지가액 / 구역면적 = 2,300천원 × 1,182.93㎡ / 4,806천원 / 26,945.4㎡ = 2.10%	
	체육 시설	부속토지주1)	•(체육시설 연면적 / 건축물 분양면적) × 대지면적 / 구역면적 = (1,192.47㎡ / 100,435.6㎡) × 24,695.4㎡ / 26,945.4㎡ = 1.09%	3.49%
		환산부지주2)	•유형별 표준건축비 × 건축연면적 / 부지가액 / 구역면적 = 2,613천원 × 1,192.47㎡ / 4,806천원 / 26,945.4㎡ = 2.40%	
산정기준		부지가액	환산부지산정 공사비	
		강정평가금액(준주거) 4,806천원/㎡	건축공사비(별첨내역 가격이하 적용) 보육시설 2,300천원/㎡, 체육시설 2,613천원/㎡	

주1) 공공시설등의 부속토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 ①항 6조에 따라 산정

주2) 공공시설등의 환산부지는 서울시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2011.10)」에 따라 산정

- 변경

구분			공공기여비율 (용도지역 1단계 상향 : 10%이상)			
구역면적(㎡)			24,558.1	공공시설 연면적 (㎡)	보육시설	1,216.11이상 (지하 378.18 포함)
대지면적(㎡)			24,035.7		체육시설	1,836.08이상 (지하 1,836.08 설치)
기반시설면적(㎡)			522.4			
총 공공기여 비율(%)			10.51% (부지 0.54% + 건축물 9.97%)			
공공 시설 등	부지(도로)		•도로(순부담)면적 / 구역면적 = 132.4㎡ / 24,558.1㎡ = 0.54%			
	보육 시설	부속토지주1)	•(보육시설 연면적 / 건축물 분양면적) × 대지면적 / 구역면적 = (1,216.11㎡ / 99,772.687㎡) × 24,035.7㎡ / 24,558.1㎡ = 1.19%			3.78%
		환산부지주2)	•유형별 표준건축비 × 건축연면적 / 부지가액 / 구역면적 = 2,577천원 × 1,216.11㎡ / 4,935천원 / 24,558.1㎡ = 2.59%			
	체육 시설	부속토지주1)	•(체육시설 연면적 / 건축물 분양면적) × 대지면적 / 구역면적 = (1,836.08㎡ / 99,772.687㎡) × 24,035.7㎡ / 24,558.1㎡ = 1.80%			6.19%
		환산부지주2)	•유형별 표준건축비 × 건축연면적 / 부지가액 / 구역면적 = 2,899천원 × 1,836.08㎡ / 4,935천원 / 24,558.1㎡ = 4.39%			
	산정 기준			부지가액주3)		환산부지산정 공사비주4)
			감정평가금액(준주거) 4,935천원/㎡		건축공사비 보육시설 2,577천원/㎡, 체육시설 2,899천원/㎡	

주1) 공공시설등의 부속토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 ①항 6조에 따라 산정

주2) 공공시설등의 환산부지는 서울시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2014.7)」에 따라 산정

주3) 보육시설 및 체육시설 계획위치 변경에 따라 해당 지번(1647번지) 감정평가금액 적용

주4) 환산부지산정 공사비는 서울시 「2015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등 가이드라인」 적용

다. 기부채납 공공시설 건축물의 공간적범위 결정 계획

구분	시설명	위치	공간적 범위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보육 시설	관악구 신림동 1644번지일대	지상 1층	860.87 이상	감) 22.94	837.93 이상	서고시 제2012-235호	조성 후 기부채납
			지하 1층	322.06 이상	증) 56.12	378.18 이상		
변경	체육 시설	관악구 신림동 1644번지일대	지하 1층	1,192.47 이상	증) 643.61	1,836.08 이상	서고시 제2012-235호	조성 후 기부채납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결정후 공공기여에 따른 부지면적을 환산하여 재산정후 반영토록 함

※ 사업계획 확정시 시설면적에 대한 대지권을 설정토록 함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도시 경관	- 주변인접 주거지역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 - 조망형 경관분석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 형성 유도 - 가급적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복층 신사로변으로 녹지(수림대)를 통한 경관 향상 - 옹벽과 방음벽, 담장 등 구조물에 담쟁이 등의 식재로 벽면 녹화	-
환경 보전	- 보도주차장 등을 자연 상태의 토양으로 유지하거나 투수성 포장재 사용 - 청정연료 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단지 조성 - 녹지면적 확보로 동식물의 비오름(생물 소공간) 공간 확보 - 담장의 설치를 자제하고 수목식재, 화단 설치 등 친환경적인 소재 사용 - 신사로(폭원20m)변 방음림 및 방음창 설치로 차량소음 대책마련	-
재난 방지	- 화재 : 지구내 화재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수해 : 우수유역을 검토하여 구역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 하며 구역 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화한 억제토록 하여 홍수, 수몰 등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 - 교통 - 재해시 소방도로로서의 기능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 체계구축 - 단지내 도로의 노상주차처를 최대한 억제하여 사고 발생시 교통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 -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 재난방지형 옥외공간구성, 건축설계, 시설물 설치 계획	-

7) 정비사업 시행계획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기정	주택재건축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현황 : 892세대 계획 : 1,124세대 (증) 232세대	-
변경	주택재건축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서울주택도시공사	현황 : 887세대 계획 : 1,147세대 (증) 260대	-

※ 기정의 세대수계획은 사업시행인가(13. 5. 16) 사항임

8) 인구, 세대수 및 주택규모별 배분계획

· 기정

구 분	합계	전용면적 60㎡ 이하	전용면적 60초과~85㎡ 이하	전용면적 85㎡ 초과	비고
계	1,124	936(83.3%)	188(16.7%)	-	-
조합원분양	-	-	-	-	-
일반분양	951	763	188	-	-
장기전세주택	173	173	-	-	-

※ 정비계획수립시 조합원분양·일반분양 등 선호도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일반분양으로 표기

· 변경

구 분	계	조합원분양	일반분양(기업형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비 고
합 계	1,147	744	273	130	-
60㎡ 이하	소 계	744	273	130	-
	30㎡이하	-	-	-	-
	30㎡초과 ~ 50㎡이하	325	79	130	-
	50㎡초과 ~ 60㎡이하	686	157	-	-
60㎡초과 ~ 85㎡이하	136	136	-	-	-
85㎡ 초과	소 계	-	-	-	-
	85㎡초과 ~ 135㎡이하	-	-	-	-
	135㎡초과	-	-	-	-

9)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분	획지 번호	가구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기정	1	-	26,945.4	관악구 신림동 1644번지 일대	24,695.4	공동주택용지
변경	1	-	24,035.7	관악구 신림동 1644번지 일대	24,035.7	공동주택용지